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112호 2015. 11. 13(금)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5 - 1376 호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 남원시 공고 제 2015 - 1374 호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7
- 남원시 공고 제 2015 - 1366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5 - 8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35
- 남원시 고시 제 2015 - 88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37
- 남원시 고시 제 2015 - 87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39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공고 제2015-1376호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지급금 독촉 등에서 미상환 시 수급권 정지는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도 근거하지 아니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지급금 상환에 대한 무이자 규정 추가(안 제7조)

나.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정지 규정 삭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 우편번호 : 55738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1),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9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11.
 제출자: 남원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
 장

1. 개정이유

대지급금 독촉 등에서 미상환 시 수급권 정지는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도 근거하지 아니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지급금 상환에 대한 무이자 규정 추가(안 제7조)

나.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정지 규정 삭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의료급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 2015. 11.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를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로,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를 “수익·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로, “부담 및 기타”를 “부담·그 밖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관리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을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1. 경리관과 징수관: 기금운용관
2. 지출원과 출납원: 기금출납원

제5조 제1항 중 “수납하고자”를 “수납”으로,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를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의료시설”을 “의료급여기관”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로,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송부받은”을 “받은”으로,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를 “지급명령을 내려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불금상환 등)”을 “(대지급금상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불한 날부터 3월”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불금액”을 “대지급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불금액”을 “대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제7조 제3항 중 “대불상환의무자”를 “대지급상환의무자”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6월이내”를 “6개월이내”로, “의거”를 “따라”로,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지급금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읍·면·동장의 확인과 남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손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에 따른</u> ----- -----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u>----- -----.</p>
<p>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u>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u>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u>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u> 한다.</p>	<p>제2조(세입·세출) ---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u>----- ----- <u>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 기금의 결산상잉여금·</u> ----- <u>수익·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u> ----- ----- <u>부담·그 밖의</u> -----.</p>
<p>제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p>	<p>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u>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u> -----.</p>
<p>② 삭제</p> <p>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p>	<p>② 삭제</p> <p>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p>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1. 경리관과 징수관: 기금운용관

2. 지출원과 출납원: 기금출납원

제5조(수입) ① -----
---- 수납 -----
-----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적어야 -----.

③ -----
----- 발급-----
-----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

제6조(지출) ① -----
----- 의료급여기관-----
경우에는 -----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지급금

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
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
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
다.

제7조(대불금상환 등) ① 수급권
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
서 의료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
급여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
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
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
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
한 달의 말일로 한다.

-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 회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

보내야 -----.

② 제1항에 따라 -----
----- 받은 -----
----- 지급명
령을 내려야 -----.

제7조(대지급금상환 등) ① 수급
권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
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
금 총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3
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
-----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
-----.

- 1. 대지급금액-----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독촉 등) ①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

2. 대지급금액-----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③ -----
-- 대지급상환의무자-----

-----.

제8조(독촉 등) ①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
----- 경우에는 -----
----- 6개월
이내-----
--- 따라 -----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경우에는 -----
따라 -----.

제9조(결손처분) -----

- 경우에는 ----- 대지급

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
게 된 때

2. 「의료급여법」 제24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
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에 의한다.

금-----.

1. -----
된 경우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
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지급금상환이 불
가능한 경우(읍·면·동장의
확인과 남원시 의료급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
손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
한다)

제10조(준용) -----
----- 따
른다.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상환 금	대지금금액	상환액	미납액
내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〇〇〇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상환 금	대지금금액	상환액	미납액
내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〇〇〇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상환 금	대지금금액	상환액	미납액
내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상환 금	대지금금액	상환액	미납액
내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〇 〇 〇 장 ㉠			
분 임 수 입 원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			
상환의무자	생년월일	주소	
독촉구분	고지번호	분기별	대지급상환금
제 차	제 호	년 분	금 원
제 차	제 호	년 분	금 원
<p>계 금 원</p> <p>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〇〇〇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p> <p>년 월 일</p> <p>남 원 시 장 ㉞</p>			

독 촉 장 수 령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년 / 분기 금 액 : 금 원 수 령 자 주소 : 성 명 : ㉞ (상환의무자와의 관계) 수령년월일 :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			처리기간 지체없이
세 대 주 성 명		생년월일	
수 급 권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진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의료급여 기관명		주 소	
급여 비용	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현금납부액		
	대지급금신청액		
<p>「의료급여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며 대지급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 대 표 자 : (인)</p> <p>남원시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급 여 비 용 대 지 급 금 승 인 서</p> <p>「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비고</p> <p>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 승인을 할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지급금 승인서를 의료 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순증가액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5-1374호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
- 같은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협의체 운영지침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규정 (안 제3조)

- 대표협의체 구성 (안 제5조)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정 (안 제8조)
- 위원회 임기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 우편번호 : 55738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1),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8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
- 같은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협의체 운영지침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변경함
 - ▶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규정 (안 제3조)
- 다. 대표협의체 구성 (안 제5조)
- 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정 (안 제8조)
- 마. 위원의 임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 ~ 2015. 11. .(20일간)
 - 결 과: 실시
 - 2) 비용추계서: 별첨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동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성별, 연령별 통계 구축,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기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사항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1명과 실무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복지행정·장애인복지·자활지원·희망복지지원·여성다문화·아동청소년·노인복지담당,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성별분리 통계 구축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

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행정·장애인복지·자활지원·희망복지지원·여성다문화·아동청소년·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토 후 선정된 사람
- ③ 실무분과 분과장(이하 “실무분과장”이라 한다)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자원 발굴 및 연계
 2.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

다.

③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당연직 또는 위촉직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常勤)의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근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시 복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 개인, 단체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각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본다.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8조 (회의 수당)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2015) 따른 정기회의 개최
- 대표협의체 : 연2회, 실무협의체 : 연4회, 실무분과 : 연1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당 등
 - 대표협의체 : 20명 × 70,000원 × 2회 = 2,800,000원(공무원 제외)
 - 실무협의체 : 16명 × 70,000원 × 4회 = 4,480,000원(공무원 제외)
 - 실무분과 : 76명 × 70,000원 × 2회 = 10,640,000원(공무원 제외)
- 운영비 및 인건비
 - 운영비, 간사 인건비(1명) : 42,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비용		295,000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세출	수당,운영,인건비 등	295,000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천원)

구분	연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95,000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시비		295,000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5. 부대의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와 관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6. 협의사항 : 위원 증원계획에 따른 기획실 예산계 예산지원 사전 협의

7. 작성자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7급 진균환 ☎ 620-6824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5-1366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차장법령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규정 삭제(안 제16조 제3항)
 -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
 - 우편번호 : 55738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교통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8),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차장 조례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고시 제 2015 - 8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5년 11월 13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 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운봉 동천2길 소로 개설공사(2공구)	남원시 운봉읍	도로	소로	3-306호	운봉읍 서천리 200-1 ~운봉읍 서천리 207-2	L=110m B=6.0m	2015. 11	남원시		
							2016. 08			
동충4통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동충동	도로	소로	2-28호 2-29호	동충동 390-9 ~동충동 391-4	L=176m B=8.0m	2015. 9	남원시		
							2016. 3			

※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공 사 명 : 운봉 동천2길 소로 개설공사(2공구)

연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분할 지번 (편입)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시	읍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1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99	전	545	199-1	159	남원시					
2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00-1	전	159	200-3	87	남원시					
3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01-1	전	281	201-3	14	남원시					
4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07-2	답	1,481	207-8	174	남원시					
5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07-3	답	1,260	207-10	202	남원시					

□ 공 사 명 : 동충4통 소로 개설공사

연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분할 지번 (편입)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1	남원시	동충동	390-9	답	649	390-9	649	남원시					
2	남원시	동충동	390-4	도	21	390-4	21	남원시					
3	남원시	동충동	391-4	답	790	391-4	592.5	남원시	전주시 중노송동 2가 000-11	압류	000세무서	000세무서	
							197.5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공 사 명 : 운봉 동천2길 소로 개설공사(2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 건 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 명세	성 명	주 소	
1	운봉읍 서천리	198-1	주택(창고)	목조스레트지붕 (10.0m*2.5m)	25㎡	남원시 운봉읍 00리 000-1	채0석				
			담장(블록)	L=14m, H=1.3m	18.2㎡						
			감나무		1주						
소계			3건								
2	운봉읍 서천리	200-1	담장(양철)	L=19m, H=1.0m	19㎡	남원시 운봉읍 00리 007	차0석				
			관정		1식						
소계			2건								

남원시 고시 제 2015 - 88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가. 고시점수: 총 12점
 - 지적도근점 설치 : 12점
- 나. 고시내용: 별첨
- 다. 성과보관장소: 지적서고

2015. 11. 13.

남 원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내역(조산동 수창 해뜨레)

일련 번호	구 분	기준점명 및점번호	좌표(지역)		좌표(세계)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성과보관 장 소	비 고
			X	Y	X	Y				
1	도근점	7710	311234.68	233403.55	311234.68	233403.55	남원시 조산동 976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2	도근점	7711	311239.49	233482.49	311239.49	233482.49	남원시 조산동 198-1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3	도근점	7712	311251.45	233554.81	311251.45	233554.81	남원시 조산동 193-5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4	도근점	7713	311141.94	233485.48	311141.94	233485.48	남원시 조산동 180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5	도근점	7714	311111.85	233415.77	311111.85	233415.77	남원시 조산동 177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6	도근점	7715	311145.26	233378.08	311145.26	233378.08	남원시 조산동 174-7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7	도근점	7716	311093.82	233337.40	311093.82	233337.40	남원시 조산동 154-1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8	도근점	7717	310984.86	233237.07	310984.86	233237.07	남원시 조산동 151-3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9	도근점	7718	310943.79	233247.76	310943.79	233247.76	남원시 조산동 581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10	도근점	7719	310981.70	233295.97	310981.70	233295.97	남원시 조산동 138-1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11	도근점	7720	311051.11	233430.80	311051.11	233430.80	남원시 조산동 121-41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12	도근점	7721	311093.69	233498.37	311093.69	233498.37	남원시 조산동 116-5	2015.08.28	지적서고	신설

남원시 고시 제 2015 - 87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및 망실기준점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점수: 총13점 (지적도근점: 13점설치)

- 지적도근점 성과고시 : 13점

나. 고시내용: 별첨

다. 성과보관장소: 지적서고

2015. 11. 12.

남 원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13점) 성과 고시 내역

일련 번호	구 분	기준점명 및점번호	좌 표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성과보관 장 소	비 고
			X	Y				
1	도근점	7697	212247.71	232788.33	남원시 신정동 29-25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2	도근점	7698	212274.63	232804.09	남원시 신정동 29-25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3	도근점	7699	212322.59	232819.11	남원시 신정동 29-25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4	도근점	7700	212407.32	232854.64	남원시 신정동 29-25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5	도근점	7701	212393.35	232888.95	남원시 신정동 25-1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6	도근점	7702	212338.08	232863.08	남원시 신정동 29-42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7	도근점	7703	212293.85	232880.73	남원시 신정동 29-43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8	도근점	7704	212243.87	232858.03	남원시 신정동 29-7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9	도근점	7705	212357.58	232952.95	남원시 신정동 21-1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10	도근점	7706	212301.27	232960.51	남원시 신정동 29-35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11	도근점	7707	212270.57	232946.47	남원시 신정동 29-35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12	도근점	7708	212249.02	232946.24	남원시 신정동 29-40	2014.06.03	지적서고	신설
13	도근점	7709	212347.00	232982.44	남원시 신정동 산4-2	2014.06.03	지적서고	신설